#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0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조경태・김소희・최은석

이헌승 · 서천호 · 곽규택

김용태 · 서명옥 · 조은희

김상욱 • 최보유 • 김형동

이상회 · 최수진 · 안상훈

우재준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」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, 사업주가 권고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.

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및 제2조의2제1호 등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80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노동관계의"를 "연령 등 고용상 차별 방지 및 노동관계의"로 한다.

제2조의2제1호 중 "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산업현장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6조제6항제2호 중 "제26조제1항"을 "제26조제1항 및 「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8제1항"으로 한다. 제15조제4항 중 "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동관계에	제1조(목적)
관한 판정 및 조정(調整) 업무	
를 신속・공정하게 수행하기	
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	
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	
으로써 <u>노동관계의</u> 안정과 발	연령 등 고용상 차별 방
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	지 및 노동관계의
다.	
제2조의2(노동위원회의 소관 사	제2조의2(노동위원회의 소관 사
무)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	무)
다음 각 호와 같다.	<u>.</u>
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	1
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	
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	
법률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	
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	
률」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	
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	
률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	
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	
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	
법률」, 「산업현장 일학습병	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
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	원에 관한 법률」, 「남녀고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판정 • 결정 • 의결 • 승인 •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 정 등에 관한 업무

2. ~ 4. (생략)

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 ① 7 ~ ⑤ (생 략)

-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.
- 1. (생략)
- 2.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(「남 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 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

3. (생략) ⑦ (생략)

제15조(회의의 구성 등) ① ~ ③ 제15조(회의의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

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
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용상
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
촉진에 관한 법률
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 ①
~ ⑤ (현행과 같음)
(a)
1. (현행과 같음)
2
제26조제1
항 및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
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
<u>률」 제4조의8제1항</u>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⑦ (현행과 같음)
-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, 「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」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」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」, 「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법률」 또는 「남녀고용평등과일・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」에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.

<b>4</b>
「산업현장 일
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
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
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
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
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
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⑤ ~ ⑨ (생 략)